

의안번호	2215963
의 퇴 인	이달희의원
회 답 일	2026.5.26.
추계번호	26D0112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※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은 무상 대여·사용의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만을 규정 ¹⁾	재량규정
2	안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※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 ²⁾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	

1) **현행법 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2) **현행법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상세 사유

□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(안 제16조)

- 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³⁾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
 - －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⁴⁾도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- 현행법 시행령은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·사용이 가능한 특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
 - ①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
 - ②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
 - ③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이 경우 국·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·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·사용하게 할 수 없음)
- 개정안에 따라 국유·공유 재산 무상 대여·사용 대상에 한국자원봉사협회를 추가하는 경우,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다만,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·사용이 가능한 ‘대통

3) **현행법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**현행법 제17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)**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·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

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

3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·연구

4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

5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

6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

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'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렵고, 한국자원봉사협회의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' 수행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18조)

- 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의 대상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한편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⁵⁾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등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
- 다만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공익사업 여부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·확산 사업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627백만원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사업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2,4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5)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6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"등록비영리민간단체"라 한다)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"공익사업"이라 한다)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